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사적분과 소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8. 4. 25 (수요일), 14:00 ~ 16:50
-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203호
- ▣ 출석위원 : 이재범, 유재춘, 이승용, 이영식, 이재운,
최성락, 한필원(이상 7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 | | |
|----|--|-------|
| 1 | 사적 제535호 해남 전라우수영 주변 조형물 설치 | (공 개) |
| 2 | 사적 제519호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주변 청소년 수련 시설 조성 | (공 개) |
| 3 | 사적 제122호 창덕궁 주변 교육연구시설 신축 | (공 개) |
| 4 | 사적 제136호 강화 참성단 주변 하늘전망대 조성 및 헬기장 확충사업 | (공 개) |
| 5 |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 (공 개) |
| 6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주변 도로 개설 | (공 개) |
| 7 | 사적 제249호 부여 송국리 유적 주변 태양광 시설물 설치 (허가사항 변경허가) | (공 개) |
| 8 |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 주변 주택 신축 및 진출입 도로 개설 | (공 개) |
| 9 |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 주변 구석기 조형물 설치 | (공 개) |
| 10 |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 주변 주택단지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 (공 개) |
| 11 | 사적 제340호 경주 천관사지 주변 LPG 집단공급 배관망 설치 | (공 개) |
| 12 | 사적 제241호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 공장 건립 | (공 개) |
| 13 |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공 개) |
| 14 |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 (공 개) |
| 15 |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및 개간 부지 조성 | (공 개) |
| 16 |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주변 공동주택 재건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 (공 개) |
| 17 |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부지 및 진출입로 조성 | (공 개) |
| 18 |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부지 조성 | (공 개) |
| 19 |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주변 도로 정비 | (공 개) |
| 20 | 사적 제522호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 (공 개) |
| 21 |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 근린생활 시설 신축 | (공 개) |

| | | |
|----|--|-------|
| 22 |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등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공 개) |
| 23 |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단독주택(6개동) 신축 | (공 개) |
| 24 |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공 개) |
| 25 |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공 개) |
| 26 |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주택 증축 | (공 개) |
| 27 |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공장 및 창고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 (공 개) |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8-03-001

1. 해남 전라우수영 주변 조형물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사적 제535호 「해남 전라우수영」 주변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해남 전라우수영 주변 회전교차로 중앙(교통섬)에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8년 2차 소위원회('18.03.28.)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해남 전라우수영(사적 제535호 / 2016.9.30. 지정)
 - 소재지 : 전남 해남군 남문길 25-2 외
- (3) 신청내용<조형물 설치>
 - 위치 :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1037-1{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80m 이격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규격 : 가로 3.1m, 세로 2.6m, 높이 4.2m
 - 주요재료 : 스테인레스 스틸(조형물), 화강석(기초부)
 - 방수 투광등 4개소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8.04.17/문화재위원 ○○○, ○○○, ○○○)
 - 회전 교차로에 세워지는 조형물(높이 4.2m)은 주변 도로 경사 등을 고려하여 성벽에서 보았을 때,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사적 지정 이후 해남군의 전라우수영 주변 정비 과정과 관련하여, 건축물

조성이나 조형물 설치 시에는 우수영의 역사문화적 성격을 고려하며, 문화재 분야 전문가 자문 또는 문화재청과 협의(또는 심의)를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지자체 자문의견('18.03.21/문화재위원 ○○○)

○ 제시된 상징조형물은 우수영 문화마을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개별심의 구역에 설치되는 조형물로 규모는 높이 4.2m, 폭 3.1m 정도로 계획되고 도로 중앙에 세워지는 것으로 우수영에서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변 현황 검토 내용

- 이미 추진되고 있는 우수영 문화마을 사업의 추진 과정 및 내용
- 우수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물 및 조형물 현황 파악
- 상징 조형물과 우수영과의 높이차(단면도 등)와 가로 경관 등의 자료

(3) 지자체 자문의견('18.03.21/문화재위원 ○○○)

○ 교차로 일대 개발 현황과 주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조형물의 규모가 전라 우수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기단부와 조형물의 조화 측면에서 기단부 디자인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디자인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 검토를 받아 시행

2.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주변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사적 제519호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주변 청소년수련시설을 조성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주변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5년 7차 소위원회('15.07.22.) 조건부 가결 : 시굴조사로 발견된 유구 4개소에 대해 발굴조사 실시
- 허가기간 만료, 사업내용 변경(건물 3동 추가, 배치 변경)에 따라 재신청
- '18년 1차 소위원회('18.01.24.)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현지조사 후 사업내용 축소(건물 3동 추가-> 2동 추가)하여 재신청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사적 제519호)
 - 소재지 :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산24-1 외
- (3) 신청내용<청소년 수련시설 조성>
 - 위치 :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112-1 일원(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 사업내용

| 구분 | 당초 | 변경 | 면적(m ²) | 비고 |
|------|----------|----------|---------------------|----------|
| 합계 | | | 87,745 | |
| 기반시설 | 도로 | 도로 | 9,918 | |
| | 역사문화광장 | - | | 삭제 |
| | 주차장(2개소) | 주차장(2개소) | 3,947 | 1개소 배치변경 |
| 수련시설 | 열린캠핑장 | 열린캠핑장 | 3,734 | |
| 체육시설 | 다목적 구장2 | - | | 삭제 |
| | 모험체육장 | - | | 삭제 |

| 구분 | 당초 | 변경 | 면적(m ²) | 비고 |
|--------|-----------|-----------|---------------------|------|
| 문화시설 | 금석문전시원지 | 금석문전시원지 | 809 | 배치변경 |
| | 고인돌전시원지 | - | | 삭제 |
| | 문화비전시원지 | - | | 삭제 |
| | 야외공연장 | 야외공연장 | 5,539 | |
| | 야외전시장 | 야외전시장 | 1,600 | |
| | - | 전시관 | 660 | 신설 |
| | - | 체험관 | 660 | 신설 |
| 환경학습시설 | 동물사육장 | 동물사육장 | 2,257 | |
| | 야외학습장 | 야외학습장 | 368 | |
| 모험활동시설 | 체험놀이마당 | - | | 삭제 |
| | 놀이마당 | 놀이마당 | 960 | |
| 기타 | 조성녹지,원형녹지 | 조성녹지,원형녹지 | 61,127 | |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3.07/문화재위원 ○○○, ○○○)

- 개별심의구역에 전시관 1동과 체험시설 2동을 건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건물의 위치, 규모, 높이 및 디자인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바람.
- 외부 공간과 조경계획도 문화재 경관에 조화되도록 하기 바람.
- 위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안을 마련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을 필요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경관 및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 무허가 행위에 대한 조치 필요(권고사항)

3. 창덕궁 주변 교육연구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2호 「창덕궁」 주변에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창덕궁 주변에 최고높이가 11.45m인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창덕궁(사적 제122호 / 1963.01.18.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율곡로 99
- (3) 신청내용<교육연구시설 신축>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08-4번지 외 5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m 이격/3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1m)}
 - 사업내용
 - 건축물 신축

| 구분 | 신청내용 | 비고 |
|------|-------------------|----|
| 연면적 | 5,417.72㎡ | |
| 건축면적 | 925.66㎡ | |
| 최고높이 | 11.45m |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지하4층, 지상3층 | |

- (4) 신청인 의견
 - 노후화되어 철거된 불교미술관 위치에 노무현 센터를 신축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8.04.12/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본 건은 창덕궁에서 18m정도 이격된 3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1m)인 곳에 연면적 5,417.73㎡ 지상 3층, 높이 12m의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사지의 가중 평균 높이를 계산하여 허용기준에서 정하는
높이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설계도서 보완 후 재검토

4. 강화 참성단 주변 하늘전망대 조성 및 헬기장 확충사업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6호 「강화 참성단」 주변 하늘전망대 조성 및 헬기장 확충사업에 대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참성단 주변 하늘전망대 조성 및 헬기장 확충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6년 15차 위원회('16.12.28)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7년 1차 위원회('17.01.11)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7년 6차 위원회('17.06.14)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참성단(사적 제136호 / 1964.07.11.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흥왕리 산42-1
- (3) 신청내용<마니산 하늘전망대 조성 및 헬기장 확충사업>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문산리 산5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85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구분 | | 기존현황 | ('16.12.28/ '17.01.11) | '17.06.14 | 보완(수정)안 | 비고 |
|-------------------|----|--------|---------------------------|-----------|---------|----|
| 하늘전망대 (헬기장 확충) | 지름 | 8.2m | 20m | 18m | 20m | |
|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목재데크,H빔 | 좌동 | 천연목재데크 | |
| 산불감시초소 | | 4.66㎡ | 4.66㎡ | 4.66㎡ | 4.66㎡ | |
| 위원회 심의결과 | | - | 부결 | 보류 | | |

※ 헬기장 면적(314.16㎡), 계단 데크(23.59㎡), 연결통로 데크(60.73㎡)

(4) 신청인 의견

- 강화 참성단은 폐쇄와 민원에 의한 개방을 반복하고 있는 문화재로 적은 면적에 많은 인원이 몰려 이완이 진행되고 있어, 참성단을 보호하기 위함. 또한 낙상사고 등이 매년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헬기장 확장도 부수적으로 고려하였음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7.13/문화재위원 ○○○, ○○○, ○○○)

- 현재 참성단 방문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등산객의 낙상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방문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헬기의 이송이 요구되고 최초 헬기의 제원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규모의 헬기장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헬기장의 규모가 조정될 필요가 있음
- 단, 제시된 헬기장 설치안은 경관에 저해되어 수정이 요구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외관과 색채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5. 서울 한양도성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주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등 일대
-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신축>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26-7(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m 이격)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395.4m²
 - 건축면적 : 196.79m²
 - 연면적 : 868.23m²
 -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최고높이 11.3m)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8.04.20/문화재위원 ○○○)
 - 한양도성에 인접하여 계획된 다세대주택 신축 건으로, 계획안과 연접되어 있는 건축물에 비하여 약 2개층이 높게 건물 높이가 계획되어 혜화문 및 도성에서 보여지는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2)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의견('18.04.16)
 - 한양도성의 혜화문과 20~30m 거리를 두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어 장소성이 높은 곳으로 판단되므로 지상4층으로 신축될 경우 한양도성 주변의 조망권 확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지자체의견('18.03.29/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 ○○○·○○○·○○○)

- 서울 한양도성의 혜화문의 정면에 위치하여 장소성이 매우 높은 곳임. 본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한양도성 주변 조망권 확보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6. 서울 풍납동 토성 주변 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토성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등 일대

(3) 신청내용<도로 개설>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13-2 외 44필지, 천호동 480-34 외 8필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6m 이격)

○ 사업내용

- 천호대교 남단 IC 연결도로 2,650m 개설
- 지하차도 317m 개설
- 교량 30m, 옹벽 572m, 방음벽 986m 설치

라. 참고사항

(1) 지자체의견('18.04/○○대학교 ○○○)

- 천호대교 남단과 올림픽대교가 만나는 지점 주변은 풍납토성의 서북 모서리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곳임. 따라서 기존 보링조사결과 및 풍납토성의 복원과정, 올림픽대로 건설과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공정 파악이 필요함. 송파구 일대 지하 지층구조에 밝은 한양대 이성호박사, 풍납토성 주변의 변화과정을 연구한 서울시립대 이난경박사, 현재 발굴조사를 실시중인 국립문화재연구소 담당자의 협조가 필요함.

(2) 지자체의견('18.04.13/문화재전문위원 ○○○)

- 본 사업구간은 일부지점이 풍납동 토성의 서북벽의 추정범위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 시행 전에 문화재 잔존여부 확인을 위한 시굴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단, 사업성격상 현재 사용중인 도로를 지하화하는 관계로 정상적인 시굴조사 실시가 곤란하다는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입회조사라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할 것임.

(3) 지자체의견('18.04/○○대학교 ○○○)

- 해당 도로 개설 예정지는 풍납토성 서벽 및 성 내부 공간과 상충되는 지역임. 따라서 지하도로 개설은 백제문화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해당지역은 과거 지표가 낮았을 가망성이 높아 올림픽대로 건설과정에서 토지 매립층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관련 공사 기록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요구됨.
- 토지 매립층 내에서의 도로 지하화 공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백제 문화층 훼손 여부와 관련하여 고고학측면 전문가 의견이 필요함.

(4) 지자체의견('18.04.13/○○대학교 ○○○)

- 풍납 토성은 지질 현황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홍적층 지대를 따라 축조된 것으로 판단됨. 해당 시설의 경로가 충적층을 지나고 있다면 유구를 훼손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홍적층 지대로 통과한다면 유구 훼손의 부담이 있음.
- 층상구소 상 매립층은 1970년대의 제방이므로 제방을 관통하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적층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적합한 대응은 집수정 위치에 시추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층상의 연대 분석을 통해 백제 문화층에 간섭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공사가 가능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백제문화층 훼손 우려(공사 구간의 하부는 풍납동 토성 유구 잔존 가능성 큼)

7. 부여 송국리 유적 주변 태양광 시설물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249호 「부여 송국리 유적」 주변 태양광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송국리 유적 주변에 태양광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기 위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송국리 유적(사적 249호 / 1976.12.31. 지정)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산24-1 일원
- (3) 신청내용<태양광설치→버섯재배용 및 태양광설치>
 - 위치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752-5, 752-6, 752-7, 752-8, 752-9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88m 이격/1구역(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총12,905.4㎡ (매장유존지역 아님)

| | 기허가('18.01.22) | 금회분(변경내용) |
|-------|-------------------|---|
| 태양광설치 | 3,285 모듈, 높이 2.8m | 좌동 |
| 버섯재배사 | - | 총6동, 건축면적 5,319㎡, 최고높이 3.27m(태양광 설치 포함 총높이 6.07m) |
| 허가조건 | 시굴조사 선행 | |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1.05/문화재전문위원 ○○○, ○○○ 연구원)

- 본 건물은 문화재구역의 북동측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약 310m 가량 이격된 위치에서 축사 및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축사의 조성면적이 넓고, 지붕 위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및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문화재 주변 특성상 주변지역과 신청지에서 고려와 조선시대의 유물이 발견되므로,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성이 있음. 그러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표본조사를 실시할 필요 있음

(2) 관리단체의견(부여군 문화재사업소)

- 기 허가받은 국가사적 제249호 부여 송국리 유적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당초 태양광발전시설(최고높이 2.8m, 총 3,285모듈) 설치만 할 계획이었으나, 부여군청 개발허가부서(농정과) 협의과정에서 건축물 지붕 위 설치 시에만 허가 가능을 통보받아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에 버섯재배사 신축을 추가하게 됨으로써 기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 총 6동의 버섯재배사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 태양광발전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3,285모듈이며, 버섯재배사 및 태양광발전설비 시 시설물 최고 높이는 6.07m가 됩니다.
- 해당지역이 국가사적 제249호 부여 송국리유적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제1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마. 의결사항

- 부결
 - 건축물 신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8. 공주 석장리 유적 주변 주택 신축 및 진출입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 주변 주택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공주 석장리 유적 주변 주택 신축(3동) 및 진출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석장리 유적(사적 334호)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번지 외

(3) 사업내용<주택신축 및 진출입도로개설>

- 위치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92-5, 14-1{문화재구역과 인접/1구역(개별심의,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규모 : 1필지를 3필지로 분할 후 각 필지에 주택 1동씩 신축, 주차장 1동 (부지 평탄화를 위한 절토 2,572.21㎡ 및 성토 1,313.02㎡)

| | 위치 | 동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최고높이 | 규모 |
|----|------------------------------|----|--------|------------|-------|------------------|
| 주택 | 석장리동 92-5 (총 대지면적 3,243㎡) | 가동 | 1,908㎡ | 주택 130.37㎡ | 6.80m | 지상1층 |
| | | | | 주차장 49㎡ | - | 지하1층 |
| | | 나동 | 628㎡ | 93.56㎡ | 5.35m | 지상1층 |
| | | 다동 | 707㎡ | 93.56㎡ | 5.35m | 지상1층 |
| 도로 | 석장리동 92-5, 14-1 | | 175㎡ | | | 폭6m, 길이 약 25m |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4.05/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문화재구역의 동측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5m가량 떨어진 사유지상에 지상 1층 규모의 주택 3동을 신축하고자 허가를 신청한 건임. 따라서, 매장문화재로서의 문화재적 속성과 이격거리를 고려할 때 시·발굴조사를 통해 유물 출토가능성에 대한 선행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신청된 건축용도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 구조 및 형태는 신청 필지가 고도를 상징하는 대표적 자연경관인 금강변에 면하여 있고, 문화재와도 근접하여 있음을 감안할 때, 이질적 느낌을 주어 전체적인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 하겠음.
- 따라서, 선사유적으로서 주변 자연 및 인문환경과의 일체적 특성과 고도로서 공주시가 지니는 도시적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 구조 및 형태의 디자인에 있어 전통적 건축양식(한옥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추가 의견) 향후 허용기준 조정시 해당 개별심의 및 고도제한구역은 한옥에만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경관 및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9. 공주 석장리 유적 주변 구석기 조형물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 주변 구석기 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공주 석장리 유적 주변 도로에 구석기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신청함
 - '17년 8차 소위원회('17.12.27) 부결 : 과도한 조형물 설치로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석장리 유적(사적 제334호)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구석기 조형물 설치>
 - 위치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94-6, 137-5, 산 15-2, 산17-2 일원(32번 국도)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구석기 조형물(2개소, 철골구조)

| | | |
|----------|----------------------|-------------------|
| | '17.12.27 | 금회분 |
| 설치면적 | 1,200㎡ | 좌동 |
| 수량 | 2개소 | 좌동 |
| 최고높이 | 15m | 13.5m |
| 구조물 간 간격 | 180m(구간 내 수목식재 800㎡) | 180m(구간내 수목식재 없음) |

라. 의결사항

- 부결
 - 조형물 규모 과도로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10. 공주 석장리 유적 주변 주택단지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 주변 택지조성 및 주택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공주 석장리 유적 주변 택지조성 및 주택신축을 위하여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 신청함
- '17년 8차 소위원회('17.12.27) 부결 : 과도한 형질변경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석장리 유적(사적 334호)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번지 외
- (3) 사업내용<택지조성 및 주택 신축>
 - 위치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26-2, 산7-1(1구역, 3구역)
 - 변경내용(총 사업면적 11,272㎡)

| 구분 | 기 허가면적 | '17.12.27 | 금회 |
|------------------|---|--|---|
| 1구역 석장리동 산7-1 | 3,526㎡ | 4,652㎡ | 4,236㎡ |
| 3구역 석장리동 26-2 | 2,900㎡ | 좌동 | 좌동 |
| 사업내용 | 주택 19동(각동 연면적 98.04㎡, 최고높이 7.2m) 도로 및 녹지공간 조성 | 주택 총25동, (연면적, 최고높이, 동일) 도로 및 녹지공간 조성 동일 | 주택 총24동, (연면적95.34~116.4㎡, 최고높이 6.9m 동일) 도로 71㎡ 증가, 녹지공간 352㎡감소 |

라. 의결사항

○ 부결

- 과도한 형질변경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11. 경주 천관사지 주변 LPG 집단공급 배관망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40호 「경주 천관사지」 주변에 LPG 집단 공급 배관망을 설치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천관사지 주변에 LPG 집단공급 배관망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천관사지(사적 제340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교동 244번지 일원

(3) 신청내용<LPG 집단공급 배관망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천원안길3 외 총 39세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5m 이격 /3구역(경사지붕 12m 이하)}

○ 사업내용 : LPG집단공급 배관망 규모 : 매설배관 (L=1253.8m, B=0.78m)

- 토공(공급관-962.5m) : 터파기 803.2m³, 모래부설 262m³, 되메우기 및 다짐 577m³, 잔토처리 226m³

- 토공(세대배관-291.3m) : 터파기 127.6m³, 모래부설 110.2m³, 되메우기 및 다짐 57.9m³, 잔토처리 69.7m³

- 구조물공 : LPG소형저장탱크 2.0Ton Package 1기 설치

(콘크리트 기초 5.0×2.8×0.3m , 안전휨스 4.8×2.8×1.75m)

- 포장공 : 공급관(879.9m), 세대배관(140.1m), 비포장도로 제외

* 공급관(879.9m)

- 아스팔트 포장(한차선-89.2m) : 312.2m²

- 아스팔트 포장(전차선-672.3m) : 2016.9m²

- 콘크리트 포장(굴착부-38.5m) : 30.03m²

- 소형고압블럭 포장(굴착부-79.9m) : 62.3m²

* 세대배관(140.1m)

- 콘크리트 포장(굴착부-81.6m) : 53.04m²
- 소형고압블럭 포장(굴착부-58.5) : 38.02m²

(4) 신청인 의견

○ 사업목적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연료취약계층의 연료사용 환경개선(가스 저장시설, 배관)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 마을의 가스사용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지역 균형발전, 민원해소 등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 및 신규 수요창출에 의한 수익증대를 꾀하고자 함.

○ 필요성

- 가정 연료의 전환으로 석유 의존도 감소
- 배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으로 취급 편의 및 공급 안정성 제고로 국민생활 편익증대
- 무공해 연료 사용으로 공급지역 도시공해 해소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12.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 공장 건립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41호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에 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에 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사적 제241호 / 1974.12.14.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942-1

(3) 신청내용<공장 건립>

○ 위치 :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19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17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가동>

- 건축구조 : 일반 철골조
- 최고높이 : 12.70m
- 건축규모 : 지상1층
- 연면적 : 1,700.00m²
- 건축용도 : 공장

<나동>

- 건축구조 : 일반 철골조
- 최고높이 : 10.20m
- 건축규모 : 지상2층
- 연면적 : 461.10m²
- 건축용도 : 공장(사무실,식당)

<토목>

- 구조물 : 보강토옹벽(H=0.0~5.0m), L= 152.0, (H=5.0m), L= 334.0
- 석축(H=0.0~3.0m), L= 73.0, (H=3.0m), L= 190.0
- 콘크리트포장(T=20cm), A=1,172.0 m²
- 벤치플럼관(#300) L=177.0m, 이중벽관(D300) L=143.0m
- U형측구(0.3×0.6) L=28.0m, 집수정(0.5×0.5×1.0) 8EA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절성토 과다 등)

13. 구리 동구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리 동구릉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17년 12차 위원회('17.11.22)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구리 동구릉 (사적 제193호)
 -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인창동)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산69-16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91m 이격 /2구역(평5m, 경사7.5m), 공통사항(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함, 도로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사업내용

| 구분 | 1차('17.11월) / 부결 | 금차 | 비고 |
|------|----------------------------|--------------------------------|---------|
| 대지면적 | 491㎡ | 491㎡ | - |
| 연면적 | 218.7㎡ | 194.36㎡ | 감 24.3㎡ |
| 건축면적 | 196.83㎡ | 194.36㎡(단독39.9㎡/근생154.46㎡) | 감 2.5㎡ |
| 최고높이 | 11.7m | 4.9m | 감 6.8m |
| 구조 | 지상2층/평지붕/철근콘크리트조 /절성토 4m이상 | 지상1층/평지붕/철근콘크리트조 /옹벽(1.7~2.9m) | 감 1층 |

(4) 신청인 의견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너무 협소하고 오래된 건축물로서 시설환경이 열악한지라, 좀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여, 주위환경 및 본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4.18/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대상지는 허용기준 2구역(건물높이 5m,경사지붕7.5m)에 기존건물(1층)을 철거하고 2층건물(높이 11.7m)를 신축하는 당초계획은 지형변화 최소화와 건물높이 조정등 역사문화환경 저해 사유를 동문화재 위원회(2017년 제12차/11.22)에서 부결된 바 있음
- 금회 변경신청된 설계도서는 진입부 전면에 옹벽(콘크리트/높이 약2.6m)을 설치하고 그 위에 평지붕 건물(높이4.9m)을 신축하는 계획은 기존지반선을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 서면의견('18.04.18/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대상지는 구리 동구릉 문화재구역과 191m이격된 2구역(건물높이 5m, 경사지붕 7.5m)에 기존건물(1층)을 철거하고 단독주택(건축면적194.36㎡, 최고높이 4.9m, 1층) 1동을 신축하는 건임
- 동 신청지는 2017년 11월에 단독주택(최고높이 11.7m, 2층) 1동을 신축하고자 허가신청하였으나, 과도한 절성토(높이 4m이상)로 인한 역사문화환경 저해를 이유로 부결된 바 있으나,
- 금회 변경 신청된 설계도서는 1층 건물로 높이를 줄여 신축하는 것으로 진입부 전면에 옹벽(약 2.6m)은 기존 지반선을 고려하여 계획높이보다 단을 낮춰 건축할 경우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4.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시 소재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자전거도로 연결공사를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에 국토종주자전거길을 설치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여주 영릉과 영릉(사적 제195호)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 (3) 신청내용<세종대왕릉~국토종주자전거길 일원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934-1, 948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1구역(개별심의), 2구역(평5m), 5구역(도시계획)}
 - 사업내용
 - 연 장 : L=697.9m
 - 도로폭 : B=3.0m
- (4) 신청인 의견
 - 기존 국토종주자전거길과 세종대왕릉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세종대왕릉을 쉽게 갈수 있도록 하고자하며 관광지 연계와 더불어 자전거 이용객의 편리성 제공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4.16/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물은 여주 영릉의 전면 1구역(개별심의 구역), 2구역(1층 규모), 5구역(도시계획에 의한 구역)에 속한 곳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영릉과 남한강이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는 기존 천변 둑(약 폭3m)을 활용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기존 지형변경 없이 적절하게 계획된 것으로 사료됨
- 단, 영릉 진입 공간과 접하는 자전거 도로는 추후 교량 완공에 따라 보행과 차량, 자전거 등의 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면 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5.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및 개간 부지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시 소재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및 개간 부지 조성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 및 개간 부지 조성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여주 영릉과 영릉(사적 제195호)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및 개간 부지 조성>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960-4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170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구 분 | 사업내용 | 비고 |
|----------|------------------------------------|----|
| 사업면적 | 2,478㎡(주택부지면적 998㎡, 개간부지면적 1,480㎡) | |
| 건축면적/연면적 | 165.78㎡ | |
| 최고높이 | 6.08m | |
| 건축구조 | 경량철골구조 / 경사지붕 / 1층, 1개동 |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8.04.16/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여주 영릉의 전면 안산에 속하는 임야 배면의 1구역(개별심의 구역)에 건축면적 165.78㎡, 높이 6.08m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 영릉에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으나,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가 높아 주변 경관에 위압감을 주며, 개별심의 구역의 주택 규모에 있어 선산 관리라는 규모에 맞춰 국민주택 규모로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 반영하여 주택 규모 축소할 것

16. 남양주 흥릉과 유릉 주변 공동주택 재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207호 「남양주 흥릉과 유릉」 주변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흥릉과 유릉 주변에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본 건은 '10.2월 건축행위 허가를 득한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 '18년 2차 소위원회('18.03.28) 보류 : 자료보완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흥릉과 유릉(사적 제207호)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흥유릉로 352-1(금곡동)
- (3) 신청내용<서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변경>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59-59 외 6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40m 이격/5구역(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초과 시 개별심의)}
 - 사업내용

| 구 분 | 기허가(2010.2월) | 금회 | 변 경 |
|-----------|--------------------|----------------------|-------------|
| 대지면적 | 15,823㎡ | 19,169㎡ | 증 3,346㎡ |
| 건축면적 | 2,626㎡ | 5,117㎡ | 증 2,491㎡ |
| 연 면 적 | 48,376㎡ | 65,009㎡ | 증 16,633㎡ |
| 최고높이 및 구조 | 54m, 지하2층, 지상9~20층 | 70.4m, 지하2층, 지상1~23층 | 증 16.4m, 3층 |
| 동수 및 세대수 | 6동, 398세대 | 8동, 553세대 | 증 2동, 155세대 |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3.20/문화재전문위원 ○○○, ○○○)

- 본 신청지는 남양주시 흥릉과 유릉 문화재구역에서 340m 이격된 허용기준 5구역(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에 '10년 기 허가받은 최고높이 54m,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를 금회 최고높이 : 70.4m, 지상 23층의 규모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능의 우측면에 위치하며, 수목에 의해 차폐되어, 인지되지 않아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붙임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최고높이 등 보완 자료 1부.

<붙임> 최고높이 검토 의견서

건명 : 남양주 금곡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최고 높이 검토

1. 최고 높이 규정 검토

1) 국토계획법상 최고 높이 규정

근거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구분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비고 |
|------|------------------|-------------------------------------|---------------|----|
| 법적기준 | 4층이하 (단지형 5층) | 높이제한 없음 (조례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 |

※ 남양주시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별도 높이 제한 없음.(본 사업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임)

2) 정비계획상 높이계획 수립사항

- 일반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시 높이계획은 건축법 등 개별법에 따르도록 함.
- 금곡2구역의 경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높이계획이 수립됨.

▶ 금곡2구역 정비계획상 건축물에 관한 계획
(남양주시 고시 제2017-108호, 2017.3.30.)

| 구분 | 구역 | | 가구 또는 획지 | | 위치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층수 |
|-----|-------|---------------------|----------|---------------------|-------------------------|-----------|------------|-----------|-----|
| | 명칭 | 면적(m ²) | 명칭 | 면적(m ²) | | | | | |
| - | 금곡2구역 | 19,169 | ㉠-1 | 17,261 | 남양주시 금곡동 159-59번지 일원 | 50% 이하 | 250% 이하 | 54m 이하 | 20층 |
| 비 고 | | | | | | | | | |

2. 최고 높이 계획 변경 사유

1) 사업목적상 합리적인 인동간격을 반영,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상하고자 문화재현상변경을 요청합니다.

본 사업부지는 홍.유릉의 정면에서 양각을 벗어난 측면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홍.유릉 주변에 산림이 우거져 있어 왕릉에서 사업 부지를 바라 볼 때나 사업부지에서 왕릉을 바라볼 때 봉분이 산림에 가려 보이지 않음으로 문화재의 높이제한에 대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지구의 변경을 목적으로 문화재현상변경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입주자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주고 지역발전에 도모하고자 문화재현상변경 계획변경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2) 금곡2구역 정비계획 변경 신청 사항

| 구분 | 평균 층수 | 최고 층수 | 최고 높이 | 기준 레벨 | 비 고 |
|-----|---------|-------|--------|----------|-----|
| 당 초 | 14~15 층 | 20 층 | 54 M | GL 59.10 | |
| 변 경 | 15~16 층 | 23 층 | 70.4 M | GL 63.50 | |

※ 붙임

첨부1 - 신청대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첨부2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첨부1] 신청대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 | | |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일반 159-59 | | |
| 지목 | 대 | 면적 | 16,113 m ² |
| 개발공시지가 (m ² 당) | 1,111,000원 (2017/01) | | |
|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p> <p>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p> | <p>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금곡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소공원(2015-09-10)(저축), 소로3류(2015-09-10)(저축), 종로3류(저축)</p> <p>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금곡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재확인바랍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금곡2 주택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외각경계로부터200m이상500m이내의지역)<문화재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 |
| <p>「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p> | | | |

확인도면

범례



- 보전산지
- 준보전산지
-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과밀억제권역
- 정비구역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 절대보호구역
- 상대보호구역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종로3류
- 소로1류
- 소로2류
- 소로3류
- 철도
- 소공원
- 초등학교
- 법정동
- 개발제한구역

축적 1 / 3000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첨부2]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 4층 이하 (단지형 다세대주택 5층 이하) | 높이 규정 없음 | 높이 규정 없음 |
|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8.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9. 교육연구시설 10. 노유자시설 11. 수련시설(야영장시설 포함) 12.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1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공장(환경오염시설 제외) 15.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 16. 창고시설 1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충전소 등 18.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9.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0.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1. 방송통신시설 22. 발전시설 |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8.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9. 교육연구시설 10. 노유자시설 11. 수련시설(야영장시설 포함) 12.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1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금융업소 등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공장(환경오염시설 제외) 15.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 16. 창고시설 1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충전소 등 18.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9.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 20.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1. 방송통신시설 22. 발전시설 |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8.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9. 교육연구시설 10. 노유자시설 11. 수련시설(야영장시설 포함) 12.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13. 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공장(환경오염시설 제외) 15.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 16. 창고시설 1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충전소 등 18.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9.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 20.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1. 방송통신시설 22. 발전시설 |

17.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부지 및 진출입로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부지 및 진출입로 조성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영빈묘 주변에 단독주택 부지 및 진출입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18년 2차 위원회('18.02.21) 부결 : 성·절토 과다로 인한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영빈묘(사적 제367호)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
- (3) 신청내용<단독주택 부지 및 진출입로 조성>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33-2번지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99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구분 | 1차('18.2월) | 금차 | 비고 |
|------|-------------------|--|----|
| 대지면적 | 1,842㎡(도로개설:590㎡) | 1,842㎡(도로개설:590㎡) | |
| 연면적 | 84.90㎡ | 84.90㎡ | |
| 건축면적 | 77.35㎡ | 77.35㎡ | |
| 최고높이 | 7.3m | 7.3m | |
| 구조 | 지상2층 / 철근콘크리트 | 지상2층 / 철근콘크리트 | |
| 기타 | 임야쪽 석축쌓기 | 임야쪽 석축쌓기를 자연법면유지 및 건축물 위치 전면으로 약5.8m 이전 배치 | |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4.18/문화재전문위원 ○○○, ○○○)

- 신청대상지는 1구역(개별심의구역)내에 건물2동(높이7.3m)을 신축하는 당초계획은 문화재위원회(2018년 제2차)에서 성·절토(4m이상)과다로 인한 역사문화환경 저해우려로 부결된 바 있음
- 금회 변경 신청된 설계도서는 전반적으로 부지를 성토(약2.5m내외)하고 석축을 제외하는 등 건물을 전면(북서쪽)으로 약5.8m 이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1구역에서 산림녹지지형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물신축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형질변경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18.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부지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영빈묘 주변에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18년 2차 위원회('18.02.21) 부결 : 성·절토 과다로 인한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영빈묘(사적 제367호)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
- (3) 신청내용<단독주택 부지 조성>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33-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18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구분 | 1차('18.2월) | 금차 | 비고 |
|------|---------------|--|----|
| 대지면적 | 1,157㎡ | 1,157㎡ | |
| 연면적 | 84.90㎡ | 84.90㎡ | |
| 건축면적 | 77.35㎡ | 77.35㎡ | |
| 최고높이 | 7.3m | 7.3m | |
| 구조 | 지상2층 / 철근콘크리트 | 지상2층 / 철근콘크리트 | |
| 기타 | 임야쪽 석축쌓기 | 임야쪽 석축쌓기를 자연법면유지 및 건축물 위치 전면으로 약5.8m 이전 배치 | |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4.18/문화재전문위원 ○○○, ○○○)

- 신청대상지는 1구역(개별심의구역)내에 건물2동(높이7.3m)을 신축하는 당초계획은 문화재위원회(2018년 제2차)에서 성·절토(4m이상)과다로 인한 역사문화환경 저해우려로 부결된 바 있음
- 금회 변경 신청 된 설계도서는 전반적으로 부지를 성토(약2.5m내외)하고 석축을 제외하는 등 건물을 전면(북서쪽)으로 약6m 이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1구역에서 산림녹지지형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물신축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형질변경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19. 제주목 관아 주변 도로 정비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주변에서 도로를 확장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목 관아 주변 도로를 확장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목 관아(사적 제380호)

-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이동 43-3 일원

(3) 신청내용<도로 정비(확장)>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용담일동 2-9번지~제주시 용담일동 119번지{문화재 구역으로부터 443m~222m 이격/7구역(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 사업내용

- 도로정비 L=350m, B=3~15m(광로 3-1-2호선/서문사거리~병문핌프장
- 도로 확장 및 인도 조성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4.19/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지는 제주목 관아와 인접하여 있는 지점으로 도로를 확장 및 인도를 조성하는 사업임. 신청도로는 사적지와 일정 거리가 이격되어 있어 사적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시킬 우려는 없다고 하겠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20.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522호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에서 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용담동 유적(사적 제522호)
 -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용담이동 2696-2
-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신축>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용담이동 2696-3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5m 이격)
 - 사업내용
 - 다세대 주택(5세대) 신축
 - 대지면적 : 253m²
 - 건축면적 : 151m²
 - 연면적 : 509.04m²(지상 4층, 높이 14.0m/철근 콘크리트 구조)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8.04.19/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지는 선사유적과 인접한 지역으로 4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임. 신청지 주변으로 1~2층이 분포하고 있어 동 신청주택은 역사문화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하겠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21.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사적 제516호)
 -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임당동 676-1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북 경산시 대동 166-6번지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18m 이격 /4구역(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 사업내용 : 기존건물(10.5m) 철거 후 신축
 - 건축면적 : 168.87m²
 - 연면적 : 1,092.45m²
 - 건물높이 : 32.10m
- (4) 신청인 의견 : 대지개발을 통한 주변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높이 과다)

22. 강화산성 등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등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산성 등 주변에 도시계획도로(중로2-631호선) 개설공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18년 2차 소위원회('18.03.28.)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 1964.06.10. 지정),
강화 고려궁지(사적 제133호 / 1964.06.10. 지정),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사적 424호 / 2001.01.04.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등
- (3) 신청내용<도시계획도로(중로2-631) 개설공사>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355외 31필지, 옥림리 69 외 5필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40m, 150m, 200m 이격/1, 5, 7구역)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길이L=1,038m, 폭B=13.5m
 - 토공 : 흙깎기(14,253m³), 흙쌓기-노상(1,747m³)-노체(6,408m³), 사토(6,098m³)
 - 배수공 : 우수관-D300(408m), 우수관-D450(952m), 우수관-D600(18m),
맨홀-1호/2호(18개소/2개소), 집수정(27EA), L형측구(1,992m),
V형측구(1,177m)
 - 포장공 : 아스콘포장(10,042m²), 보도블럭포장(5,467m²), 도로경계석(2,286m)
 - 부대공 : 표지판(3EA), 차선도색(508m²)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4.05/문화재위원 ○○○, ○○○, ○○○)

- 같은 폭의 도로가 이미 근접하여(100~150m) 개설되어 있고 신청 도로는 그보다 더 멀리(250~300m) 이격되므로 크게 무리가 없다.
- 강화산성에서 육안으로 전혀 조망되지 않고 신청지에서도 산성이 의식되지 않아 경관상 저해 요소가 없다
- 1973년 설정된 도시계획도로의 연장선상으로 다른 계획과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도로 개설시에는 사전 문화재 조사(시굴 등)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23.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단독주택(6개동)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오산시 소재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단독주택 6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7년 3차 소위원회('17.04.26.)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절토 과다)
 - '17년 5차 소위원회('17.07.26.)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7년 12차 위원회('17.11.22.)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사적 제140호 / 1964.08.29.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62-1번지 외
- (3) 신청내용<단독주택(주건축물6동, 부속건물 6동, 지하주차장) 신축>
 -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임33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58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구분 | 부결(2017.4.26.) 3차 소위원회 | 부결(2017.7.26.) 5차 소위원회 | 부결(2017.11.22.) 12차 위원회 | 금회 신청안 |
|-------|---------------------------|---------------------------|----------------------------|--------------------------|
| 신청면적 | 8,458㎡ | 8,458㎡ | 4,905㎡ | 7,370㎡/도로1,088㎡ |
| 지 목 | 임야 | 임야 | 임야 | 임야 |
| 건축면적 | 1,362.78㎡ | 1,221.03㎡ | 783.63㎡ | 788.58㎡ |
| 연 면 적 | 1,362.78㎡ | 1,221.03㎡ | 813.63 | 1,150.56㎡ |
| 규 모 | 1층(주10/부10) | 1층(주10/부10) | 1층(주6/부6) 지하주차장 | 2층 / 6개동 |
| 절/성토 | 절토 2.0~6.6m | 절토 0.6~3.6m | 절토 2.0~6.4 | 3.3m/0.5~9m (성토-식생블럭) |
| 구 조 | 한식 목구조 | 한식 목구조 | 한식 목구조 | 철근콘크리트 |
| 최고높이 | 6.9m | 6.9m | 6.9m | 7.9m |

라. 참고자료

(1) 현지조사의견('17.01.20/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물은 오산 독산성에서 남측으로 386m 이격된 1구역(개별심의구역)에 지상2층 규모, 높이 8.43m의 다가구 주택 13개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일체화된 지형이 유지되고 있는 임야에 대규모 성·절토를 동반하고, 오산 독산성에서 인지되는 곳에 대규모의 주택이 입지하는 계획은 오산 독산성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동지역은 오산 지곶동 유물산포지로서 사전에 시·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임.

마. 의결사항

- 부결
 - 원지형 훼손과 옹벽 설치 과다로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24.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에 대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07.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71-2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43-14 외 5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45m 이격/2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1m)}
 - 사업내용

| 구분 | 내용 | 비고 |
|-------|----------|-------------------|
| 부지면적 | 6,532.0㎡ | |
| 신청면적 | 2,630.0㎡ | 1,585.0㎡(도로면적 포함) |
| 지 목 | 임야 | |
| 건축면적 | 119.88㎡ | 건폐율 11.47% |
| 연 면 적 | 149.40㎡ | 용적률 14.30% |
| 규 모 | 지상 2층 |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
| 최고높이 | 12.8m | 평지붕·경사지붕 |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높이 조정 필요)

25.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에 단독주택을 기존 허가 사항보다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7.02.07. 주택 신축 허가(1동, 건물높이 5.55m, 건축면적 99.66㎡)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진 고려청자 요지(사적 제68호 / 1963.1.21. 지정)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산4 외
- (3) 신청내용<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계율리 732-4{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구분 | 기존 허가('17.2.7.) | 금회 신청안 |
|------|-----------------|----------------|
| 건축면적 | 99.66㎡ | 130.92㎡ |
| 연면적 | 99.66㎡ | 187.35㎡ |
| 규모 | 1동(지상1층) | 2동(지상2층, 지상1층) |
| 최고높이 | 5.55m | 7m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8.04.19/문화재전문위원 ○○○, ○○○)
 - 경사지의 지형적 특성과 택지로 개발된 주변의 입지 여건을 고려할 때, 기 허가된 1층 높이 수준에서의 경관관리가 바람직하다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26.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주택 증축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에 주택을 증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에 단독주택을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5.11.19. 주택 신축 허가(1동, 건물높이 5.2m, 건축면적 99.95㎡)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진 고려청자 요지(사적 제68호 / 1963.1.21. 지정)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산4 외
- (3) 신청내용<주택 증축>
 -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계율리 234-3{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0m 이격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구분 | 기존 허가('15.11.19.) | 금회 신청안 |
|------|-------------------|----------|
| 건축면적 | 102.84㎡ | 92.79㎡ |
| 연면적 | 99.95㎡ | 149.04㎡ |
| 규모 | 1동(지상1층) | 1동(지상2층) |
| 최고높이 | 5.2m | 7.9m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8.04.19/문화재전문위원 ○○○, ○○○)
 - 기존 1층 규모로 허가된 사안에 대해 증축하고자 신청한 행위를 중심으로 영향여부를 검토한 바, 이질적 건축형태와 과도한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경관적 일체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27.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공장 및 창고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에 공장 및 창고를 신축하고자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에 공장 및 창고를 기존 허가 사항보다 증축, 위치 이전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7.03.30. 신축 허가(2동, 건물높이 10.7m, 연면적 997.5㎡)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진 고려청자 요지(사적 제68호 / 1963.1.21. 지정)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산4 외
- (3) 신청내용<공장 및 창고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계율리 234-9{문화재구역으로부터 230m 이격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구분 | 기존 허가('17.3.30.) | 금회 신청안 |
|------|------------------------|--------------------------|
| 건축면적 | 공장 502.50㎡, 창고 495.00㎡ | 공장 1,027.50㎡, 창고 330.00㎡ |
| 연면적 | 997.50㎡ | 1,357.50㎡ |
| 규모 | 2동(공장, 창고) | 2동(공장, 창고) |
| 최고높이 | 10.7m | 공장 10.7m, 창고 9.84m |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4.19/문화재전문위원 ○○○, ○○○)

- 본 건은 기 허가된 사항에 대해 위치를 조정하고 증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규모변경으로 인한 경관의 훼손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